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80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김도읍 · 김미애 · 백종현
이현승 · 박성훈 · 박수영
정연욱 · 김대식 · 이성권
서지영 · 정성국 · 조정태
곽규택 · 조승환 · 주진우
김희정 · 정동만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는 크게 해양의 관리·감독, 수산업 육성·지원, 해운·항만·해사산업 육성·지원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식품, 해양산업 외국인 투자, 해양 관련 문화·레저·관광 등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해양산업 가치사슬에 속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로 관장하고 있어 정책이 이원화되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의 실질적 대응 및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주요한 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

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관광”을 “관광(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을 “식품산업진흥(수산식품산업진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업·”을 “공업(조선·해양플랜트는 제외한다)·”로, “투자,”를 “투자(해양·수산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 “에너지·”을 “에너지(해양에너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해양정책”을 “해양”으로, “해운·항만, 해양환경”을 “수산식품산업진흥, 해운·해운물류·항만,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해양·수산 외국인투자, 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 해양환경”으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양성 및 해양안전심판, 섬 관리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u>관광</u> ,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 ----- ----- ----- <u>관</u> <u>광(해양수산문화·레저·관광</u> <u>은 제외한다)</u>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u>식품산업진흥</u> ,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① ----- ----- ----- <u>식품산업진흥</u> <u>(수산식품산업진흥은 제외한</u> <u>다)</u>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 <u>공업</u>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u>투자</u> ,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u>에너지·지하</u> 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 ----- <u>공</u> <u>업(조선·해양플랜트는 제외한</u> <u>다)</u> ·----- ----- ----- <u>투자(해양·수산 외국인투자</u> <u>는 제외한다)</u> ,----- ----- <u>에너지</u>

② ~ ⑤ (생략) 제44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u>해양정책</u>, 수산, 어촌 개발 및 수산물 유통, <u>해운·항 만</u>, <u>해양환경</u>, <u>해양조사</u>, <u>해양수 산자원개발</u>, <u>해양과학기술연구 ·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u> 관 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 ③ (생략)	(<u>해양에너지는 제외한다</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해양수산부) ① ----- -----<u>해양</u>----- -----<u>수산식품산 업진흥</u>, <u>해운·해운물류·항만</u>, <u>조선·해양플랜트</u>, <u>해양에너지</u>, <u>해양·수산 외국인투자</u>, <u>해양수 산문화·레저·관광</u>, <u>해양환경</u>----- ----- -----<u>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 발·인력양성 및 해양안전심판</u>, <u>섬 관리에</u> -----. ② · ③ (현행과 같음)
--	---